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

(김용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096

발 의 년 월 일 :2020년 12월 23일
발 의 자 :김용연 의원(1명)
찬 성 자 :경만선, 김인호, 김호진, 김화숙, 노승재, 박기재, 박순규, 봉양순, 안광석, 이광호, 이은주, 이호대, 전병주, 전석기, 정진철, 황인구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나.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.

다.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, 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 ~ 7조).

라.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 ~ 12조).

마. 에너지절약 시책, 에너지절약, 신·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, 기반구축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있도록 함(안 제13조 ~ 제14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교육행정기관”이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을 말한다.
2.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) ① 교육감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형 체제로의 전환
2.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이용효율 증대
3.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홍보 및 교육
4.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
5.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점검 및 평가)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.

② 교육감은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를 토대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.

제7조(에너지이용 합리화)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,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,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,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,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)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1.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
2.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
3. 제6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필요한 사항

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며, 담당 국장급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의원
2.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

의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홍보 및 교육 등)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실정에 맞게 에너지절약 시책, 에너지절약, 신·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, 신·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14조(교류협력)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반구축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부처 및 법인·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 서 번 호	2020121100000002

미 첨 부 사 유 서 (1 호)

요 청 인 : 김용연 의원	담 당 : 남승우 과장 이정수 팀장 원동아 예산분석관
접 수 일 : 2020.12.11.	
회 신 일 : 2020.12.18.	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3. 미첨부 사유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◯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제8조(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), 제12조(위원회 운영)에 따라 비용 발생

※ ① 단, 같은 조례안 제5조(실태조사), 제6조(점검 및 평가)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'환경·생태·에너지교육'팀에서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

② 같은 조례안 제13조(홍보 및 교육 등) 및 제14조(교류협력)는 교육혁신과 '환경·생태·에너지교육'팀의 생태전환교육내실화 사업(2021년 예산 2,279,030천원)을 통해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(붙임 참고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◯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[제8조(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) 및 제12조(위원회 운영)에 해당]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≒ 22,500천원(연평균 4,500천원)

◯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2,500천원으로 연평균 4,500천원임

◯ 추계의 전제

- 제9조(위원회 구성)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15명으로 하되,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(부교육감, 담당 국장급 공무원)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 1명을 포함하고, 12명은 외부위원으로 가정함
- 위원회의 운영은 연 2회 개최를 가정(정기회 2회 기준)
-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 비용(합계) ≒ 22,500천원(연평균 4,500천원)

- 총비용 = 위원회 설치·운영비

= 22,500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합 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위원회 설치·운영 (안제8조 및 제12조)	4,500	4,500	4,500	4,500	4,500	22,500
	소계(b)	4,500	4,500	4,500	4,500	4,500	22,500
총비용(b-a)		4,500	4,500	4,500	4,500	4,500	22,500

○ 위원회 설치·운영비 ≒ 22,500천원

- 산출방식 $\sum_{i=1}^{5}$(연간위원회설치·운영비)$_i$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1~2025)

- 연간 위원회 설치·운영비 ≒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+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

≒ 3,600천원 + 900천원

≒ 4,500천원

·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= 구성원 수 ×1인당 회의참석 수당 × 1년간 회의개최 횟수

= 12명 × 150,000원 × 2회

= 3,600천원

※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「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」에 따라 기본료 10만원,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이며,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에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15만원으로 운용할 예정임

※ 참석수당 지급대상은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(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)에 따라 시의원 1명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2명 총3명을 제외한 12명 지급 전제

·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= 전체 위원 수 ×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× 1년간 회의개최 횟수

= 15명 × 30,000원 × 2회

= 900천원

※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「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」에 따라 3만원으로 가정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남승우
사업평가팀장	이정수
주 무 관	원동아

☏ 02-2180-7953

e-mail : dongya1@seoul.go.kr

【붙임】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

(단위:천원)

구분	세부사업명 (세세부사업명)	2020년 예산	사업내용
제5조(실태조사)	※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'환경·생태·에너지교육'팀에서 단위학교에 공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		
제13조(홍보 및 교육 등) 및 제14조 (교류협력)	생태전환교육내실화	2,279,030	- 내용 : '기후비상사태'의 생태문명 전환을 위한 초·중등 생태환경-생명교육의 혁신,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알고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, 지역연계 생태전환교육, 생태전환교육자료개발, 민간생태전환협력사업 등 - 소요예산 : 2,279,030천원

자료 :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